

## 영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1
----------	-----

제출년월일 : 2005. 4.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안 제3조)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 정부의 보조금 및 용자금
-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나.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안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참고자료 : 도 관련공문(도시계획과-8899) 1부. 끝.

## 영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영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련 조례제정

1. 도 예산13310-10747(2002.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자원확보를 위한표준조례(안)에 대하여 기 통보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례제정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촉구하니, 조속히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2004.10.0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조례제정 시·군	조례 미제정 시·군	조례제정계획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포항, 김천, 구미, 영천, 상주시, 영덕, 칠곡, 봉화군	경주, 안동, 영주, 문경, 경산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울릉군	*2004.12.31까지 제정요망

붙 임 : 표준조례(안) 1부. 끝.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포항시장(도시계획과장), 경주시장(도시과장), 김천시장(도시주택과장), 안동시장(도시과장), 구미시장(도시과장), 영주시장(도시개발과장), 영천시장(도시주택과장), 상주시장(도시과장), 문경시장(도시주택과장), 경산시장(도시과장), 군위군수(새마을과장), 의성군수(도시과장), 청송군수(자치개발과장), 영양군수(건설과장), 영덕군수(건설과장), 청도군수(도시과장), 고령군수(경제도시과장), 성주군수(지역개발과장), 칠곡군수(도시주택과장), 예천군수(건설과장), 봉화군수(지역개발과장), 울진군수(문화관광과장), 울릉군수(건설과장)

★지방토목주사보 영태용      지방토목사무관 안종복      도시계획과장      진경 10/06  
문재환

협조사

시행      도시계획과-8899      ( 2004. 10. 06. )      접수      도시개발과-8107      ( 2004. 10. 07.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442 /전송 (053)950-3419      / name@gb.go.kr      / 공개

## I.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관련 강조 지시사항

### 1. 미집행 대지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 및 대지보상 재정 수요의 적정화 도모

- 도시의 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재정비계획 추진

### 2. 매수보상 결정대지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권고)

-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되 세입제원은 순세 계잉여금의 15%~30% 의무부담, 기타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 등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존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와 구별 운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매수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한정 활용

### 3. 중장기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계획 수립 운영

- 중기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재원 조달 등 배분계획 반영

- 세입재원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 등 지구노력을 통한 확보

※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에 지속적 건의

- 세출 재원은 대지소유지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전망, 재원확보능력, 대지매수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 필요한 예산의 반영조치

○ 특히 지방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신청시 반드시 대지보상재원 조달대책과 연계 검토

※ 미집행 대지보상재원의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자체사업추진 및 지방채발행 등은 중앙차원에서 재검토할 계획임

#### 4. 미집행 대지보상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추진단」을 구성하여 2005.01부터 본격 가동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도시계획관리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운영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에 의한 업무처리체계 구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주체인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시 본 조례(안)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로 제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경북도내 시군별 장기미집행조례 재정공포 현황

[2005.4.20기준]

시 군 별	제정공포일	개정공포일	재원확보비율	비 고
포항시	2003.06.19	2004.07.27	15%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 )%
경주시	준비중			
김천시	2003.12.31		15~30%	
안동시	2005.01.07		15~30%	
구미시	2003.06.03		15~30%	
영천시	2003.08.11		15~30%	
상주시	준비중			
문경시	준비중			
경산시	2005.0+4.15		15~30%	
군위군	준비중			
의성군	2004.12.31		15~30%	
청송군	2005.03.22		15~30%	
영양군	2005.02.11		15~30%	
영덕군	2004.08.03		20%	
청도군	2003.10.20		20%	
고령군	2003.07.21		15~30%	
성주군	준비중			
칠곡군	2003.07.01		15~30%	
예천군	2004.12.30		15~30%	
봉화군	2003.05.19		15~30%	
울진군	2004.12.31		15%	

※ [2003 제정 : 8시군 , 2004 제정 : 4시군 , 2005 제정 : 4시군 ,준비중 : 5시군]